

재정감찰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3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재정감찰 -

2023. 6.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경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경주시 □□□□과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 등에 따라 대지조성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경주시는 대도시권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4제1항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건축법」에 따른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¹⁾ 등을 시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²⁾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1) 주상복합건축물

2)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①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 ③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주택시설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공제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시장·군수는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주상복합건축물 사업 등을 승인 또는 인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붙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지연 명세와 같이 2021. 3. 8.부터 2021. 11. 16.까지 사업승인 또는 인가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법정부과기한 내에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대지조성사업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부담금 총 16건, 4,872,165,410원이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주시장은

① 물천리 대지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미부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82,165,410원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② 앞으로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붙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지연 명세

(단위 : 원)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승인일	법정 부과기한	부과금액
계	16건			4,872,165,410
대지조성사업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 ▲ 대지조성사업	2021. 3. 8.	2021. 5. 7.	238,578,200
대지조성사업	경주시 충효동 ▲▲▲ 40 필지	2021. 9. 8.	2021. 11. 7.	226,420,850
주택건설사업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 ▲ 외 5필지	2018. 3. 5.	2018. 5. 4.	491,903,600
주택건설사업	경주시 황성동 ▲▲▲ 아 파트 신축공사	2021. 4. 8.	2121. 4. 7.	258,639,280
주택건설사업	경주시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블럭 공동주택신축공사	2021. 6. 10.	2021. 8. 9.	149,678,800
주택건설사업	경주 신경주역세권 ▲▲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1. 7. 15.	2021. 9. 13.	518,534,510
주택건설사업	신경주 역세권 ▲▲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1. 8. 30.	2021. 10. 29.	516,203,140
주택건설사업	경주시 현곡면 ▲▲블럭 공 동주택 신축공사	2021. 9. 3.	2021. 11. 2.	373,632,500
주택건설사업	경주 황성동 ▲▲번지 일 원 아파트 신축공사	2021. 10. 26.	2021. 12. 25.	347,525,130
주택건설사업	신경주 역세권 ▲▲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1. 10. 27.	2021. 12. 26.	612,559,300
주택건설사업	신경주 역세권 ▲▲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1. 10. 27.	2021. 12. 26.	217,779,520
주택건설사업	경주시 황성동 ▲▲번지 아 파트 신축공사	2022. 6. 27.	2022. 8. 26.	55,009,720
주상복합건축물	신경주역세권 지역개발사업 지구 ▲▲블럭 주상복합 신축공사	2022. 8. 19.	2022. 10. 18.	770,769,790
주상복합건축물	경주시 안강읍 안강리 ▲▲ 번지 외 3필지	2020. 11. 4	2021. 1. 3.	28,685,470
주상복합건축물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 ▲번지 외 5필지	2021. 5. 13.	2021. 7. 12.	51,576,170
주상복합건축물	경주시 감포읍 감포리 ▲▲ ▲번지 외 4필지	2021. 11. 16.	2022. 1. 15.	14,669,430

※ 경주시 제출자료 편집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고령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고령군 □□과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 등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이하 해당 건축물을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m²당 표준건축비³⁾ (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와 부과율 그리고 건축연면적의 곱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건축연면적 산정 시 주차장,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건축설비, 승강기 등) 및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등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주상복합건물 건축사업에 대한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연면적 합계) 산정 시에는 ‘주택인 시설’(공동주택 부분)에 포함되는 주차장,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2.라.1)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로 하되, 표준건축비를 상한으로 하며,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해당 동의 최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여야 한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에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표준건축비는 공공 건설임대주택 건축비로 하되, 동별 최고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주상복합건물의 건축연면적은 주차장, 부대시설의 연면적은 포함하고, 주택용도가 아닌 업무시설의 면적은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 와 같이 2023. 3. 6. 다산면 좌학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해 표준건축비를 해당 동의 최고층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각 층수별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부과하여 38,370원을 과다 부과하는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과다·과소 부과하였다.

[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다·과소 부과 내역

(단위 : 원)

부과일	사업명	부과금액 (A)	정상 부과금액(B)	차액 (A-B)	과다·과소 부과사유
2023.3.6.	좌학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272,088,600	272,050,230	38,370	(과다 부과) ·표준건축비 적용 오류
2023.3.2.	장기리 주상복합건물	18,278,010	17,836,040	441,970	(과다 부과) ·표준건축비 적용 오류 ·연면적 산출오류 - 부대시설 제외 업무시설 포함
2023.3.29.	헌문리 주상복합건물	16,417,040	16,448,690	△31,650	(과소 부과) 표준건축비 적용 오류 ·연면적 산출오류 - 부대시설 제외 업무시설 포함

※ 고령군 제출자료 편집

그 결과 좌학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과다·과소 부과되었다.

조치할 사항 고령군수는

- ① 좌학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한 과다부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480,340원은 환급하시고, 현문리 주상복합 건축사업에 대한 과소부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1,650원은 추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② 앞으로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군위군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 등에 따라 대지조성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군위군은 대도시권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4제1항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8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대지조성사업을 승인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⁵⁾하여야 한다.

4)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출 : (1㎡당 표준 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

5) 군위군 □□□□과에서는 '23.1.1. 조직개편으로 ▲▲▲과로 대지조성사업 인허가 업무를 이관하기 전까지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고, ■■■■과에서는 '23.1.1. 조직개편으로 △△△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업무를 이관하기 전까지 해당 업무를 담당하였음

그런데 위 관서 □□□□과에서는 [표] 와 같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019. 10. 8. 사업계획 승인된 산성면 삼산리 대지조성사업, 2021. 7. 16. 사업계획 승인된 부계면 창평리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승인 사실을 ▲▲▲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과에서는 그 승인 사실을 인지 못한 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내역

(단위 : 원)

사업 승인일	사업명	사업대상지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미부과 부담금
합계	2건				423,449,680
2019.10.8.	산성면 삼산리 대지조성사업	군위군 산성면 삼산리 ▲▲▲ 외 4필지	·사업규모 : 단독주택 26필지 ·사업면적 : 25,844㎡	AAA(주) BBB(주)	286,575,640
2021.7.16.	부계면 창평리 대지조성사업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필지	·사업규모 : 단독주택 20필지 ·사업면적 : 16,478㎡	CCC(주)	136,874,040

※ 군위군 제출자료 편집

그 결과 삼산리 대지조성사업 등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총 2건, 423,449,680원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군위군수는**

① 삼산리 대지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미부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23,449,680원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② 앞으로 대지조성사업 등 승인·인가 내역을 관련 부서로 통보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법정 기한 내에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성주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성주군 □□□□과(전 ▲▲▲▲과)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 등에 따라 대지조성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성주군은 대도시권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광역교통법(2012. 2. 22. 법률 제113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된 것)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종전 광역교통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단서를 삭제⁶⁾하고, 그 내용을 개정 같은 법 제11조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인가, 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4제1항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6) 주택건설사업 등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개발사업 지구 등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⁷⁾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제8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2. 8. 23.부터 택지개발사업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된 주택건설사업에 한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택지개발사업 등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그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 와 같이 2018. 3. 5. 사업승인된 성주읍 백전리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54,594,130원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내역

(단위 : 원)

사업 승인일	사업명	사업대상지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미부과 부담금
2018.3.5.	성주읍 백전리 주택건설 사업	성주읍 백전리▲▲▲	·사업규모: 공동주택 286세대 ·주택면적: 29,821.3986m ²	(유)BBB	154,594,130

※ 성주군 제출자료 편집

그 결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방재정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7)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출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

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다 부과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m²당 표준건축비⁸⁾(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와 부과율 그리고 건축연면적의 곱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사업 및 주택 건설사업의 건축연면적 산정 시 지하층, 주차장,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건축설비, 승강기 등) 및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등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의 건축연면적은 지하층, 주차장,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의 면적은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와 같이 2021. 4. 1. 경산리 ▲▲▲ 주택건설사업 등 2건에 대한 건축연면적 산정 시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지 않고 연면적을 산출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과다 부과하였다.

[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다 부과 내역

(단위 : 원)

부과일	사업명	부과금액 (A)	정상 부과금액(B)	차액 (A-B)	과다 부과 사유
계	2건			8,399,910	
2021.4.1.	성주읍 경산리 주택건설사업	96,320,790	89,534,830	6,785,960	.연면적 산출오류 - 근린생활시설 포함
2023.4.26.	성주읍 선원리 주택건설사업	262,128,380	260,514,430	1,613,950	.연면적 산출오류 - 근린생활시설 포함

※ 성주군 제출자료 편집

그 결과 경산리 주택건설사업 등 2건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399,910원이 과다 부과되었다.

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2.라.1)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건축비로 하되, 표준건축비를 상한으로 하며,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해당 동의 최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조치할 사항 성주군수는

경산리 주택건설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과다 부과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8,399,910원은 환급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업무 부적정
소 관 청 칠곡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칠곡군 □□□□과에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한다) 제11조 등에 따라 대지조성사업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칠곡군은 대도시권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광역교통법(2012. 2. 22. 법률 제1136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된 것) 제11조제1항제4호에서는 종전 광역교통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단서를 삭제⁹⁾하고, 그 내용을 개정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업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는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는 제11조 및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인가, 승인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4제1항에 따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9) 주택건설사업 등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대지개발사업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과¹⁰⁾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조례」 제8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2012. 8. 23.부터는 개정된 광역교통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된 주택건설사업에 한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택지개발사업 등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에서 시행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그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 와 같이 2021. 10. 20. ▲▲▲▲과로부터 왜관읍 금산지구 주택건설사업 사업승인 사실을 통보받고서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내역

(단위 : 원)

사업 승인일	사업명	사업대상지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미부과 부담금
2021.10.20.	왜관읍 금산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칠곡군 왜관읍 금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블록 ▲▲로트	·사업규모 : 공동주택 35세대 ·주택면적 : 39,214.20866㎡	(주)CCC	201,798,990

※ 칠곡군 제출자료 편집

그 결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부담금 201,798,990원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칠곡군수는

10)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출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

① 금산지구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미부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01,798,990원은 추징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② 앞으로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